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5구합516]



【전문】

【원 고】

【피 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변론종결】2015. 3. 20.

【주문】

1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부적합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기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65,000,000원, 총 6가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2가구는 전세금 57,000,000원, 3가구는 보증금 11,000,000원 및 차임 월 700,000원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1940. 7. 9.생으로서 2014. 11.경 피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의 소득인정액 1,070,833원이 2014년 기초노령연금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87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4. 12. 3. 원고에게 기초노령연금보장 대상자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의 소득인정액 1,070,833원 = 월 소득평가액 700,000원(임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70,833원[{일반재산 365,000,000원(이 사건 주택) 기본재산 108,000,000원 금융부채 100,000,000원 임대보증금 68,0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

다.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 위 처분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유]

1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기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65,000,000원, 총 6가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2가구는 전세금 57,000,000원, 3가구는 보증금 11,000,000원 및 차임 월 700,000원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1940. 7. 9.생으로서 2014. 11.경 피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의 소득인정액 1,070,833원이 2014년 기초노령연금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87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4. 12. 3. 원고에게 기초노령연금보장 대상자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고의 소득인정액 1,070,833원 = 월 소득평가액 700,000원(임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70,833원[{일반재산 365,000,000원(이 사건 주택) - 기본재산 108,000,000원 - 금융부채 100,000,000원 - 임대보증금 68,0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 다.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 위 처분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